

부산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

제정 2009. 12. 24. 규칙 제1882호
개정 2013. 6. 11. 규칙 제2168호
개정 2015. 6. 17. 규칙 제2297호
개정 2019. 6. 25. 규칙 제258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학칙」 제71조의2에 따라 부산대학교 소속 학생의 학사학위취득유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라 함은 「부산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71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라 함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 또는 시설이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시설이용료”라 함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학교시설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학사과정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유예기간)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연한 이내에 학기 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유예절차)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장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며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한다.

제6조(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 ① 학칙 제36조(수업연한)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학칙 제37조(재학연한)를 초과하지 아니한 자
- ② 학칙 제71조(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서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이수한 자

제7조(신청시기) ① 최초 신청은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시기에 한다.

- ② 2회째 신청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최초 학기의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이후에 한다.

제8조(유예조건)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본교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금의 10%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다. 다만, “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제9조(유예자 권리와 의무)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0조(기타사항)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한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 또는 시설이용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별지에서 정하는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환불은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만료 후, 천재지변·전체평점평균(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이수한 학점 포함)의 기준미달 등 특단의 지연 사정이 없는 한 졸업 처리한다.

부칙(규칙 제1882호, 2009.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2009학년도 전기 졸업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칙 제2168호, 2013. 6.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297호, 2015. 6.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586호, 2019. 6.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